국 무 조 정 실

우 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/ 전화 (02) 734-9345 / 전송 (02) 720-1162

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 -44

시행일자 1998. 4. 14(년)

받 음 수신처 참조

참 조 규제개혁담당관

취 급		국 무 조 정 실 장
보 존		
조정관	4/11	
심의관		기획심의관
과 장	김남문	
기 안	김 원 득	협 조

제 목 『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지침』 시달 (국무총리 지시 제1998-5 호)

1. '98.3.1부터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,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
2. 이에 따라 「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지침」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각 중앙행정기관(서울특별시 포함)의 장은 소관규제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·규칙에 근거가 있는지를 정밀 재검토하여 근거가 없는 규제는 즉시 폐지하고, 계속존치가 필요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라 법령 등에 그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

3. 이와 함께 앞으로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산하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

앞으로 정부는 자체정비 후에도 법령에 근거없이 하위규정에 의한 규제를 계속 운용하는 사례 적발시 담당공무원은 물론 감독자도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.

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 -

4. 각 중앙행정기관(서울특별시 포함)의 장은 붙임 정비지침에 의한 자체정비계획서를 '98.7.31까지 국무조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,
특히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동 계획을 소관 자치단체에 대해 재차 시행하여 일선집행기관의 규제정비 작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지침」 1부. 끝

검열 1998. 4. 13 심사관

국 무 총 리

수신처 가(13~19, 31~67), 나01

국 무 조 정 실

우 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/ 전화 (02) 734-9345 / 전송 (02) 720-1162

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 - 41

시행일자 1998. 4. 14(년)

받 음

참 조 규제개혁담당관

선결			지시		
접수	일자 시간		결재·공람		
	번호				
처리과					
담당자					

제 목 『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지침』 시달 (국무총리 지시 제1998-5호)

1. '98.3.1부터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,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
2. 이에 따라 「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지침」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각 중앙행정기관(서울특별시 포함)의 장은 소관규제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·규칙에 근거가 있는지를 정밀 재검토하여 근거가 없는 규제는 즉시 폐지하고, 계속존치가 필요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라 법령 등에 그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

3. 이와 함께 앞으로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산하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

앞으로 정부는 자체정비 후에도 법령에 근거없이 하위규정에 의한 규제를 계속 운용하는 사례 적발시 담당공무원은 물론 감독자도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.

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 - 41

4. 각 중앙행정기관(서울특별시 포함)의 장은 붙임 정비지침에 의한 자체정비실적 및 계획서를 '98.6.30까지 국무조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,

특히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동 계획을 소관 자치단체에 대해 재차 시행하여 일선집행기관의 규제정비 작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지침(국무총리 지시 제1998 - 5호)」 1부. 끝.

국 무 총 리

國 務 總 理
國務調整室長

報告者:規制改革調整官 金德奉

法令 未根據 行政規制 整備指針

'98. 4.

國 務 調 整 室

法令 未根據 行政規制 整備指針

Ⅰ. 推進背景

□ 推進目的

○ 일선 행정기관에서 법령이나 조례·규칙에 근거없이 또는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훈령·예규·지침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 사무를 폐지·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

□ 關聯 根據規定

○ 규제법정주의(행정규제기본법 제4조)

-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알기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

-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, 세부적 내용은 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·조례·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,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음

-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

○ 훈령·고시 등의 재검토(행정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)

-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시행('98.3.1) 1년이내에 법시행 당시 시행중인 훈령·예규·지침·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해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의 근거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

-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·예규·지침·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함

○ 고시등에 관한 경과조치(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4조②)

- 이 영 시행당시('98.3.1)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·조례·규칙·훈령·예규·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이후 1년이내에 법령·조례·규칙이나 훈령·예규·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함

Ⅱ. 整備對象 規制

□ 規制의 類型

○ 규제라 함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임

< 유형 1 >

-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

  * 예시 : 허가, 인가, 특허, 면허, 승인, 지정, 인정, 시험, 검사, 검정, 확인, 증명 등

< 유형 2 >

- 국민으로부터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

  * 예시 : 허가취소, 영업정지, 등록말소, 시정명령, 확인, 조사, 단속, 과태료 부과, 과징금 부과 등

< 유형 3 >

-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

  * 예시 : 고용의무, 신고의무, 등록의무, 보고의무, 공급의무, 출자금지, 명의대여 금지, 시정·개선명령 등

□ 整備對象規制

○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"지침·규정·업무편람·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·지시·방침"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로서

①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「근거없이」 운용되고 있는 규제

②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「근거가 불명확한」 규제

③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의 「위임범위를 일탈한」 규제임

※ 정비대상 규제단위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·규정·업무편람·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·지시·방침 등 하위규정의 『조항별 개별규제』를 1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수개의 조항이 연결되어 하나의 규제사무를 이룰 때는 관련조항을 묶어 1건으로 처리

정비대상규제 예시

·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허가시 법령의 근거없이 인근주민 동의서를 요구하는 건축허가 규제

· 시장·군수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·토지 형질변경을 허가할 경우 법률의 근거없이 시·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

· 허가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법령의 근거없이 본 허가신청에 앞서서 사전 서류검토 또는 관련부처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사례

· 인·허가 민원처리의 경우 법령의 근거없이 조건을 요구하거나 단순한 유의사항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사례

·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처리시 필요이상으로 많은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경유기관 확인을 거치게 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

·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또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함으로써 행정심판이나 판결에 의해 행정청이 패소한 사항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례

· 골재채취 관련 허가조건, 허가심사기준, 채취기간 산정 등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훈령으로 규제

· 세척제 등 위생용품 검사 대행기관에 대해 검사업무 정지, 사업보고서 제출 등 모법에 근거없이 규제

· 소비자 피해발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피해보상의 범위, 품질보증기간, 보상기준을 고시로 규정하는 사례

Ⅲ. 推進方法

□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自體整備

① 소관 행정규제 자체 재검토 및 정비대상 규제 발굴

○ 각 기관별로 소관 모든 규제사무에 대해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상의 근거여부를 전면 재검토

-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·규정·업무편람·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·지시·방침 등에 규정된 "조항별 개별 규제" 한건 한건에 대해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『근거가 있는지』와 『근거가 명확한지』를 대조·확인
- 근거가 있는 규제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·규칙의 『위임범위 일탈여부』 검토

○ 민원 다발사례를 집중 검토하되, 재검토시 이해관계인,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대상과제 적극 발굴

② 재검토후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의 폐지 등 조속한 정비

○ 재검토 결과,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근거가 없는 규제 중

- 즉시 폐지가 가능한 규제는 동 지침시행후 즉시 폐지, 6월말까지 그 실적을 보고
- 폐지에 앞서 검토 또는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6월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,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계속 정비하여 늦어도 금년 10월말까지 정비완료

○ 계속 존치가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'98.12월말 이전까지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그 근거를 마련

○ 법령·조례·규칙에서 위임된 규제의 경우에도 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의 형식이 아닌 "지침·규정·지시·방침" 등에 대한 규제는 '98.12월말까지 『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』로 변경

검토 및 정비기준

·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의 근거가 없는 규제 : 폐지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근거 마련

·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규제 : 폐지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명확하게 근거 마련

·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 : 폐지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의 위임범위에 맞게 관련규정 정비

·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위임된 규제로서 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형식의 아닌 규제 : 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 형식으로 변경

※ 각급 기관은 '98.6월말까지 법령 미근거 규제에 대한 폐지실적과 함께 정비계획서를 **『별첨서식1 및 2』**에 의해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

□ 『規制改革委』의 部處·地自體 推進狀況 確認·督勵

① 『규제신고센타』 설치, 법령 미근거 규제 발굴·정비

○ 규제개혁위원회에 『규제신고센타』를 설치, 법령 미근거 규제 및 규제 오·남용 사례 대대적 발굴

- 국민제안, 관련협회·단체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수렴

○ 접수·발굴된 규제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통보

② 법령 미근거규제 정비 소홀에 대한 공무원 문책

○ 각 기관별 법령 미근거규제 정비추진상황을 국무조정실의 부처별 국정평가 대상과제로 선정, 평가

○ 자체정비 조치후에도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하위규정에 의한 규제를 계속 운용하는 사례 발견시 엄중문책

Ⅳ. 推進日程

□ 『法令 未根據 行政規制 整備指針』國務會議 報告 : '98.4.14

□ 整備指針 示達 : '98.4.14

□ 部處·地自體 自體整備 實績 및 計劃書 提出 : '98.4.15~6.30

※ 제출서식 : 1. 법령 미근거규제 총괄 정비계획서(별첨서식 1)
2. 법령 미근거규제 정비계획서 (별첨서식 2)

□ 部處·地自體 整備計劃書 委員會 檢討·審議 : '98.7.1~10.31

□ 行政事項

○ 행정자치부·교육부에서는 당실의 『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지침』을 소관 자치단체(기초 자치단체 포함)에 대해 재시행하고 소관 자치단체의 자체정비계획서를 취합, 위원회 제출

○ 서울시에서는 정비계획을 자치구에 재시행하고, 자체정비계획서를 취합하여 위원회 제출

※ '97.12.17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시달한 「훈령·예규·고시 183건 정비방안(국행일 05090-138)」 해당기관은 그 추진상황을 '98.6.30까지 **『별첨서식 3』**으로 작성, 제출

<참 고>

○ 법 제6조·시행령 제5조의 의한 「규제사무등록」에 대하여는 추후(5월중) 별도지침이 시달될 예정임

<별첨 서식 1>

법령 미근거 규제 총괄 정비실적 및 계획서

기관명 :

(정비유형 :)　　(A4 양식으로 작성)

연번	규제사무명	규제 근거	추진일정

* 정비유형은 규제폐지, 법령 등 제·개정, 당해 규정 개정 등으로 3구분하여 유형별로 별지 작성

<별첨 서식 2>

법령 미근거 규제 정비실적 및 계획서

기관명 :

연번 : (A4 양식으로 작성)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규제사무명</td><td rowspan="2"></td><td>규제규정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법령근거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담 당 과</td><td></td><td>담 당 자</td><td></td><td>TEL</td><td></td></tr>
<tr><td>규 제 목 적</td><td colspan="3"></td><td>피규제자</td><td></td></tr>
<tr><td>규 제 내 용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☆ 규제처리 기준 및 구비서류</td><td colspan="2"><처리기준></td><td colspan="3"><구비서류></td></tr>
<tr><td>☆ 규제처리 절차 및 처리기간</td><td colspan="2"><처리절차></td><td colspan="3"><처리기간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정
비
계
획</td><td>조 치
구 분</td><td>규제 폐지</td><td colspan="3">규제 존치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상위법령 제·개정</td><td colspan="2">당해 규정 개정</td></tr>
<tr><td>정 비
사 유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법령등명칭</td><td>☆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일 정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/table>

※ · 규제사무명은 지침·규정·훈령·예규·고시 등 하위규정의 조항별 개별규제를 1건으로 하여 매건별로 작성, 다만 조항별로 1건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 관련조항을 묶어 1건으로 작성

· 규제규정에는 지침·규정·훈령, 예규, 고시○조 등 관련규정과 해당조항을 기재

· 법령근거에는 현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·규칙명 및 해당위임조항 기재

· 폐지할 규제의 경우에는 ☆표시란 기재 생략

<별첨 서식 3>

훈령·예규 등 하위규정 정비 추진상황

기관명 :

(A4 양식으로 작성)

연번	규제내용(근거)	당초 정비방안	정비 추진 상황

* 본 서식은 '97.12.17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시달한『훈령·예규·고시 183건 정비방안』의 소관부처만 작성, '98.6.30까지 제출 (재정경제부,통일부,외교통상부, 행정자치부,법무부,국방부,교육부,문화관광부,농림부,산업자원부,환경부,보건복지부, 노동부,건설교통부,해양수산부,과학기술부,국세청,관세청,경찰청,병무청)

國務總理指示
第1998 - 5 號

法令 未根據 行政規制 整備指針

'98. 4.

國 務 調 整 室

法令 未根據 行政規制 整備指針

Ⅰ. 推進背景

□ 推進目的

○ 일선 행정기관에서 법령이나 조례·규칙에 근거없이 또는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훈령·예규·지침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 사무를 폐지·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

□ 關聯 根據規定

○ 규제법정주의(행정규제기본법 제4조)

-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알기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

-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, 세부적 내용은 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·조례·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,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음

-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

< 유형 2 >

- 국민으로부터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

  * 예시 : 허가취소, 영업정지, 등록말소, 시정명령, 확인, 조사, 단속, 과태료 부과, 과징금 부과 등

< 유형 3 >

-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

  * 예시 : 고용의무, 신고의무, 등록의무, 보고의무, 공급의무, 출자금지, 명의대여 금지, 시정·개선명령 등

□ 整備對象規制

○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"지침·규정·업무편람·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·지시·방침"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로서

①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「근거없이」 운용되고 있는 규제

②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「근거가 불명확한」 규제

③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의 「위임범위를 일탈한」 규제임

※ 정비대상 규제단위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·규정·업무편람·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·지시·방침 등 하위규정의 『조항별 개별규제』를 1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수개의 조항이 연결되어 하나의 규제사무를 이룰 때는 관련조항을 묶어 1건으로 처리

Ⅲ. 推進方法

□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自體整備

① 소관 행정규제 자체 재검토 및 정비대상 규제 발굴

○ 각 기관별로 소관 모든 규제사무에 대해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상의 근거여부를 전면 재검토

-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·규정·업무편람·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·지시·방침 등에 규정된 "조항별 개별 규제" 한건 한건에 대해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『근거가 있는지』와 『근거가 명확한지』를 대조·확인
- 근거가 있는 규제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·규칙의 『위임범위 일탈여부』 검토

○ 민원 다발사례를 집중 검토하되, 재검토시 이해관계인,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대상과제 적극 발굴

② 재검토후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의 폐지 등 조속한 정비

○ 재검토 결과,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근거가 없는 규제 중

- 즉시 폐지가 가능한 규제는 동 지침시행후 즉시 폐지, 6월말까지 그 실적을 보고
- 폐지에 앞서 검토 또는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6월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,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계속 정비하여 늦어도 금년 10월말까지 정비완료

○ 계속 존치가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'98.12월말 이전까지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그 근거를 마련

○ 법령·조례·규칙에서 위임된 규제의 경우에도 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의 형식이 아닌 "지침·규정·지시·방침" 등에 대한 규제는 '98.12월말까지 『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』로 변경

Ⅳ. 推進日程

□ 『法令 未根據 行政規制 整備指針』國務會議 報告 : '98.4.14

□ 整備指針 示達 : '98.4.14

□ 部處·地自體 自體整備 實績 및 計劃書 提出 : '98.4.15~6.30

※ 제출서식 : 1. 법령 미근거규제 총괄 정비계획서(별첨서식 1)
2. 법령 미근거규제 정비계획서 (별첨서식 2)

□ 部處·地自體 整備計劃書 委員會 檢討·審議 : '98.7.1~10.31

□ 行政事項

○ 행정자치부·교육부에서는 당실의 『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지침』을 소관 자치단체(기초 자치단체 포함)에 대해 재시행하고 소관 자치단체의 자체정비계획서를 취합, 위원회 제출

○ 서울시에서는 정비계획을 자치구에 재시행하고, 자체정비계획서를 취합하여 위원회 제출

※ '97.12.17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시달한 「훈령·예규·고시 183건 정비방안(국행일 05090-138)」 해당기관은 그 추진상황을 '98.6.30까지 **『별첨서식 3』**으로 작성, 제출

<참 고>

○ 법 제6조·시행령 제5조의 의한 「규제사무등록」에 대하여는 추후(5월중) 별도지침이 시달될 예정임

<별첨 서식 1>

법령 미근거 규제 총괄 정비실적 및 계획서

기관명 :

(정비유형 :)

(A4 양식으로 작성)

연번	규제사무명	규제 근거	추진일정

* 정비유형은 규제폐지, 법령 등 제·개정, 당해 규정 개정 등으로 3구분하여 유형별로 별지 작성

<별첨 서식 3>

훈령·예규 등 하위규정 정비 추진상황

기관명 :

(A4 양식으로 작성)

연번	규제내용(근거)	당초 정비방안	정비 추진 상황

* 본 서식은 '97.12.17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시달한 『훈령·예규·고시 183건 정비방안』의 소관부처만 작성, '98.6.30까지 제출 (재정경제부,통일부,외교통상부, 행정자치부,법무부,국방부,교육부,문화관광부,농림부,산업자원부,환경부,보건복지부, 노동부,건설교통부,해양수산부,과학기술부,국세청,관세청,경찰청,병무청)